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943
----------	------

김재진 의원 (국민의힘, 영등포1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위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
하고, 쓰레기 발생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, 분리배출, 재활
용 확대 등의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.
- ☐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공원 내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타 조례와
형평성에 맞춰 조정하였으며(안 제14조 제2항 및 제4항), 한강공원에서 폐
기물 발생 억제, 재활용 및 적정 처리 등에 대한 홍보, 교육, 캠페인의 실시
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(안 제21조의2 제1항).
- 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원님
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